

체코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체코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
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국유림 35,116ha, 사유림 4ha, 법인 10,228ha, 시유림 7,179ha 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PEFC 인증서 (국유림 1,440,780ha, 사유림 81,311ha, 법인 73,574ha, 시유림 184,594ha가 PEFC 인증을 받음)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PEFC Czech Republic 인증서	고시안 [별표]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 서명한 서류 (EU Timber Regulation을 기반으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유통에 관한 법 (Act 226/2013)이 제정됨. * 체코 국내제품도 해당)	별지 제1호 서식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코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 체코의 산림은 소유권에 따라 어떻게 구분(국유림, 사유림 등)되니까? 또한, 각 소유권별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 ➔ 대부분의 산림은 국유림(57.42%)이며, 주로 Forests of the Czech Republic이 경합니다. 민간기관(19.19%)과 지방자치단체(17.06%) 또한 주요 산주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법인(3.10%), 교회 및 종교 단체(2.01%)와 산림 조합 및 연합(1.18%)이 산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체코의 산림은 어떤 형태(보호림, 경제림 등)로 구분되니까?
 - ➔ 개별 카테고리의 산림은 그 주요 기능에 따라 생산림, 보호림 및 특수림으로 구분됩니다.
- 체코 산림을 관리하는 부처 또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또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 제도의 업무 담당부서와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 ➔ 산림경영은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및 국방부(Ministry of Defence)가 감독합니다. 농림부는 체코 산림 업무에 관한 정부의 중앙 조직입니다. 군 소유의 산림은 국방부가 관리합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이나 보호 지역 관할을 담당합니다.

벌채 및 활용 허가 관련 사항

- 체코 내에서 벌채를 승인 혹은 규제하는 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조항은 무엇입니까?

- * 벌채 금지 지역 및 수종 포함

- ➔ 산림경영 및 행정은 법률의 규제를 받습니다. 주요 법률은 산림법(The Act No. 289/1995)과 자연 및 경관 보호법(Act No. 114/1992)입니다.

벌채는 산림법 33조에 의해 명백히 규제됩니다.

산림법 관련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www.uhul.cz/images/ke_stazeni/legislativa_jazyky/Lesni_zakon_en.pdf

- 체코 내에서 산림의 소유권 및 형태별 벌채를 하기 위한 절차와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 ➔ 100%의 산림이 산림경영계획 또는 이와 비슷한 지침(산림경영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영됩니다. 산림경영계획은 5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산주를 대상으로 하며, 보통 10년간 유효하고 자연 보호를 담당하는 산림행정기구가 승인합니다.

산림경영계획서 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벌채 면적, 임목 재식재를 위한 토지 개량 수종 및 강화 수종의 최소 비율 및 40년 이하의 임목 무육작업의 최소 면적 (국유림 및 사유림).

산림 경영 가이드라인은 50ha 미만의 산림을 소유한 산주에게 적용됩니다. 산림 경영 가이드라인은 보통 10년 동안 유효하며 국가산림행정 기구가 발행합니다.

- 체코에서 합법적으로 벌채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문서가 있습니까?

- ➔ 위에 언급된 산림경영계획 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검증합니다.

-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 산림개발에 대한 지역계획(Regional Plans for Forest Development, RPFD)이 대표적인 방법론전 국가 산림 정책입니다. RPFD는 산림경영연구소(Forest Management Institute)가 수립하며, 산림 유형 분류체계에 대한 전

국 조사, 산림 보호에 기반하며, 산림과 산림의 잠재력에 대한 기능, 수송 수단에 대한 산림의 접근성 등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산림경영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의 기초가 되는 프레임워크 관리에 대한 지시들입니다. 그 특성은 추천할 만합니다.

국유림 경영을 담당하는 법인과 50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법인 및 개인은 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계획에는 구속력 있는 조항과 권고 조항이 포함됩니다.

정부 부처로부터 산림경영계획 및 가이드라인 작성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개인에 한하여 산림경영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산주는 이전 계획 만료 후 60일 이내에 관련 국가산림행정기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 계획의 초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발행 문서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관련국가산림행정기관은 제출된 계획이 해당법과 기타 법적 규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계획을 승인합니다. 관련국가산림행정기관이 제출된 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산주는 관련국가산림행정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수정된 계획을 제출하거나, 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 거부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련 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고국가산림행정기관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 담당 부처 또는 기관은 어디이며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에서 담당합니다.

국제 통용 인증 관련

- 체코에서는 FSC, PEFC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인증 제도(FM or CoC)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 ➔ 산주는 FSC와 PEFC가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FSC와 PEFC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 기관은 어디입니까?
 - ➔ FSC와 PEFC의 민간 인증 기관입니다.
 - 인증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 체코의 인증 산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유림: PEFC - 1,440,780 ha, FSC - 35,116 ha
 - 사유림(개인 소유): PEFC - 81,311 ha, FSC - 4 ha
 - 법인: PEFC - 73,574 ha, FSC - 10,228 ha
 - 사유림: PEFC - 184,594 ha, FSC - 7,179 ha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기 위한 사항

- 독일에서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위한 자체적인 국가인증제도 또는 민간 인증제도가 있습니까?
 -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인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문서는 무엇입니까?
 - 인증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인증제도별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 합법성 증명을 위한 체코 자체 시스템은 없으며, 위에 언급된 법률을 통해 합법성을 관리합니다.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 상기의 사항을 제외하고 체코의 고유한 특성으로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또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 EU 목재 규제 (EU Timber Regulation)를 기반으로, 목재 및 목재 제품의 유통에 관한 법 (Act 226/2013)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체코 국내 목재 및 목재 제품에도 적용되며, 체코 산주와 수입업자에게 동일한 조치를 적용합니다. 다음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타” 부분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어떤 운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성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제도 또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 산림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 EU 목재 규제는 모든 국내제품에 적용됩니다.
 - 체코의 합법성 증명 제도 또는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국가가 있습니까?
 - ➔ 각 회원국은 EU목재 규제에 관해 자국 고유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eneral Aspects

- How are forest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ownership (public, private, indigenous, etc.)? What is the percentage for each classification?
 - ➔ Most forest land is owned by the state (57, 42%) and is predominantly managed by Forests of the Czech Republic, state enterprise. Private entities (19,19%) and municipalities (17, 06%) also represent major forest owners. Other forests are owned by legal persons (3,10%), churches and religious organisations (2,01%) and forest cooperatives and associations (1,18%).

- How do you classify forests by types (protected forest, production forest, etc.)?
 - ➔ Individual categories of forests are distinguished by their prevailing functions on production forests, protection forests and special purpose forests.

- Who is in charge of the management of forests? Which department is in charge of the system on Restriction of Illegal logging and Associate Trade, and what is their contact information?
 - ➔ Forest management is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Defenc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is the central organ of civil service of forestry in the Czech Republic. Military forests are in scope of Ministry of Defense. Ministry of Environment holds the competencies in area of the national parks or protective zones territories.

Aspects Related to Harvesting permission Licenses and Permits

- Do you have any laws to approve or regulate felling? If any, what are the specific articles?

- * Including regions where harvesting is prohibited and timber species to be protected

- ➔ Forest management and state administration are regulated by a complete set of laws. The Actno. 289/1995 Coll. on Forests (the Forest Act) and the Act no. Coll., on Nature and landscape protection are principal legislative instruments.

Felling is explicitly regulated by Art. 33 of Forest Act.

I am enclosing the link to the Forest Act:

http://www.uhul.cz/images/ke_stazeni/legislativa_jazyky/Lesni_zakon_en.pdf.

- What are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harvesting based on forest ownership and types?

- ➔ 100% forests are covered by forest management plans or equivalent instrument (forest management guidelines). Plans are instruments for forest owners bigger than 50 ha usually processed for the period of 10 years and approved by forest administration body with binding position of nature protection administrative body.

Binding provisions in plans are following: maximum aggregate volume of felled timber; minimum share of soil-improving and reinforcing species for stand regeneration and minimum area of tending activities in stands under 40 years of age (state and municipal forests).

Guidelines are for forest owners under 50 ha. They are usually processed for a period of 10 years and commissioned by a state forest administration body.

- Do you have any system or documents to verify legal harvest?

- ➔ Forest management plans or guidelines as described above.

- How is the system managed?

- ➔ Regional Plans of Forest Development represent a methodological tool of the state forest policy. They are made by the Forest Management Institute and are based on the nationwide survey of forest typology, forest protection, declared functions of the forests and their potentials, accessibility of forests to transport means, etc.

The most important outputs from these plans are the framework management directives as a basis of the preparation of forest management plans or guidelines. Their character is recommendatory.

Legal entities entrusted with the management of state forests and other legal entities and individuals who own over 50 hectares are obliged to arrange the preparation of the plans. Plans include binding provisions and provisions of recommendation.

Plans and guidelines may be prepared only by legal entities or individuals who hold a license for such activities granted by the Ministry.

A forest owner is obliged to submit a draft plan for the approval of the relevant state forest administration body no later than 60 days following the expiry of the duration of the previous plan.

- How do you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issued documents?

- ➔ The relevant state forest administration body approves the plan provided that the plan does not violate this Act and any other legal regulations. If the relevant state forest administration body does not approve the submitted plan, the forest owner is obliged to submit an amended draft plan within the period of time specified by the relevant state forest administration body, or to submit written objections to the relevant body within 30 days of the service of the notice of the refusal to approve the plan. A decision on the objections is made by the superior state forest administration body within 30 days.

- Which ministry and institution in charge of this, and who is the person in charge? Please inform their contact information.

- ➔ Ministry of Agriculture.

Aspects Related to Internationally Accepted Certification

- Do you apply Certification Systems (FM or CoC) in your country which are accepted internationally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for example, FSC or PEFC?
 - ➔ Forest owners may use both FSC and PEFC certification systems when they deem them adequate.
 - What is the certification agency?
 - ➔ Private certification authorities of FSC and PEFC.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for such certifications?
 - ➔ Here you see the overview of certified forests in the Czech Republic:
 - state forests: PEFC – 1 440 780 ha; FSC – 35 116 ha
 - individuals: PEFC – 81 311 ha; FSC – 4 ha
 - Legal entities: PEFC – 73 574 ha; FSC – 10 228 ha
 - Municipal forests: PEFC – 184 594 ha; FSC – 7 179 ha

Mutually Recognized Certification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

- Do you have your own national or private certification system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 How are they managed in order to ensure reliability of the certification system?
 - What system or document verifies the certification details?
 - How can the authenticity of certification details be verified?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for each certification system?
- ➔ We do not have own national system to prove legality, it is managed under above-mentioned Acts.

Other Aspects Regarding Harvest Legality Verification

- Do you have your own distinct systems in Czech Republic to prov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other than those mentioned above?
 - ➔ Based on EU Timber Regulation, the Act 226/2013 on placing timber and timber products on the market has been accepted. The Act applies also for domestic production and has same measures for Czech forest owners and importers. Following two questions are therefore answered in the next box (Others).
 - How are they managed in order to ensure reliability?
 - How can they verify the legality of timber or timber products?
 - How much is the forest area in which the systems are applied?
 - ➔ EU Timber Regulation covers all domestic production.
 - Are those systems of Czech Republic accepted in other countries?
 - ➔ Each EU member state has its own system in place concerning the EU Timber Regulation.

목재합법성 확인서

■ 수급자 :

품 명	단 위	수 량	수 종	원산지
ex) 합판	m ³	50	라디에타파인(%)	뉴질랜드
			유칼립투스(%)	인도네시아
			포플러(%)	중국

※ 원자재의 원산지가 여러 나라인 경우에는 원산국 모두를 기재하며, 수종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모든 수종을 기재함

상기 내용은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수급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위 물품은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이며, 한국 정부에서 목재합법성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협조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호명:

대표자:

연락처: